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규정



연 세 대 학 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규정 목차

1. 학칙	2
2.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11
3. 입학전형에 관한 <u>내규</u>	14
4. 외국인학생 입학에 관한 내규	16
5. 입시 지원자 평가기준에 관한 내규	18
6.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관한 <u>내규</u>	20
7. M.A./Ph.D. <u>과정</u> 학위논문에 관한 <u>내규</u>	24
8. Ph.D. <u>과정</u> 운영에 관한 내규	27
9. M.A.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30
10. M.F.A./D.F.A. <u>과정 학위프로젝트</u> 에 관한 <u>내규</u>	31
11. D.F.A. <u>과정</u> 운영에 관한 내규	36
12. M.F.A.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43
13.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46
14. 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규	48
15. 강사 임용 등에 관한 <u>내규</u>	49
16. 언론학 전공 운영에 관한 내규	50

1. 커뮤니케이션대학원 학칙

제정일 : 2007. 03. 01.
개정일(1차) : 2009. 09. 01.
개정일(2차) : 2011. 03. 01.
개정일(3차) : 2012. 10. 23.
개정일(4차) : 2014. 10. 02.
개정일(5차) : 2015. 03. 13.
개정일(6차) : 2015. 10. 23.
개정일(7차) : 2016. 03. 25.
개정일(8차) : 2016. 09. 01.
개정일(9차) : 2016. 11. 16.
개정일(10차) : 2017. 02. 21.
개정일(11차) : 2017. 09. 01
개정일(12차) : 2018. 09. 01
개정일(13차) : 2019. 03. 01
개정일(14차) : 2020. 07. 16
개정일(15차) : 2020. 09. 08
개정일(16차) : 2020. 11. 0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커뮤니케이션과 영상 분야의 이론과 기술을 연구하고, 지도자적 인격과 창조적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교육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대학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과정 및 전공

제2조(과정) 본 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두며, 이와는 별도로 특별단기 교육과정, 본원과 외부 연구기관(이하 ‘학.연’이라 부름) 및 본원과 산업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학.산.관’이라 부름)과의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제3조(전공) ① 본 대학원에 2개 분야에 각각의 세부전공을 두며, 세부전공별 수여학위는 다음과 같다.

1. 문화학 분야

- 가. 미디어문화연구 전공: 학술석사(M.A.) 및 학술박사(Ph.D.) 학위
- 나. 문화매개 전공: 학술석사(M.A.) 및 학술박사(Ph.D.) 학위

2. 영상예술학 분야

- 가.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전공: 전문석사(M.F.A.) 학위

- 나. 영화 전공: 전문석사(M.F.A.) 학위
 - 다. 미디어아트 전공: 전문석사(M.F.A.) 학위
 - 라. <삭제>
 - 마. 영상예술학 전공: 전문박사(D.F.A.) 학위
- ② 학술석사(M.A.) 및 학술박사(Ph.D.) 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의 경우, 석 · 박사통합 과정을 두며, 운영원칙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 ③ 연구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 ④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 말 대학원이 정한 기간에 1회에 한하여 전공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 전·후 전공주임교수의 심의와 원장의 승인을 얻어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 ⑤ 삭제

제3조의 2(정원) ① 본 대학원의 정원은 석사학위과정 44명, 박사학위과정 및 석 · 박사통합과정 7명으로 하며, 연구과정은 약간 명으로 한다. 학위과정별(캠퍼스)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신촌캠퍼스

- 가. 석사학위과정 : 44명
- 나. 박사학위과정 및 석 · 박사통합과정 : 7명

2. 국제캠퍼스 <삭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2. 북한이탈주민
 3.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4.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 ·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 3 장 입 학

제4조(입학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개강일 이전으로 한다.

제5조(지원자격) 본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석사학위과정 및 석 · 박사통합과정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본교 입학시기 이전에 받을 예정인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 ② 박사학위과정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본교 입학시기 이전에 받을 예정인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6조(입학전형방법) ①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공별로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본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와 필요한 경우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 4 장 등록 및 학적

제8조(등록)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최소 4학기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박사과정은 이 후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최소 2학기 동안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최소 6학기의 정규등록과 2학기의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학생의 권한) 정규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과 학위프로젝트의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학위논문과 학위프로젝트의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과정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단, 추가로 학점을 이수할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금의 반환) 등록금을 납입한 후 일반휴학 및 자퇴를 할 경우 등록금 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반환금액은 연세대학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징계, 제적 등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11조(휴학) ①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전공주임교수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학의 총 기간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모두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2015년 9월 전에 입학한 석사과정의 휴학기간은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군복무 기간,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목적으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을 할 수 없다. 단, 군입대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한다.

제12조(복학) 휴학자로서 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정하여진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전공주임교수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제적)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등록을 마치고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학업부실,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
5. 제16조 및 제17조의 학칙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제34조에 의해 제적처분 받은 자.

제14조(자퇴) 자진 퇴학 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재입학) ① 제적된자의 재입학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 재입학이 승인된 경우 취득한 학점과 잔여학기는 재입학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제13조의 제4호 및 제5호, 제14조에 의하여 제적된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② 재입학을 원하는자는 매학기 신입생 선발 일정에 따라 재입학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별도의 면접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 5 장 수업 및 학점

제16조(수업 및 재학연한)

- ①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로 하고, 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4년(8학기), 박사학위과정은 7년(14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석·박사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6학기)로 하고 재학연한은 8년(1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 9월 전에 입학한 박사학위과정생의 재학연한은 6년(12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재학연한의 연장) 위 16조에 명시된 재학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학위논문 예비심사를 합격한자에 한해 학위논문과 [학위프로젝트](#)의 제출기한을 연기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학생의 재학연한 최종 학기말에 지도교수의 신청이 이루어지며, 전공주임교수와 원장의 심사를 거쳐 허가될 경우 석사학위과정은 1학기,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2학기에 한해 연장될 수 있다.

제18조(이수과목)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은 대학원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이수학점) ①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으로 M.A.과정은 30학점, M.F.A.과정 및 **M.S.과정은 36학점으로 한다.**

②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60학점으로 하며, 이 60학점에는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한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점인정원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최대 30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54학점으로 한다.

④ 연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15학점으로 한다.

제20조(학기당 이수학점) 각 학위과정별 학기당 취득학점은 1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연구과정은 1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학업평가 및 재수강) ① 학업성적의 평가는 A+, A0, A-, B+, B0, B-, C+, C0, C-, F, W, P, NP로 구분하며, 그 표시는 다음과 같다.

등급	A ⁺	A ⁰	A ⁻	B ⁺	B ⁰	B ⁻	C ⁺	C ⁰	C ⁻	F	W	P, NP
평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0	0	0
설명	우수			우량			양호			불량	Withdraw	청강, 연구

② 동일교과목을 재수강하였을 때는 그 중에서 양호한 성적 하나만 인정한다.

제22조(이수인정 평점) 학생의 수강과목별 출석률이 강의실시 시간의 3분의 2 이상이고 학업성적 등급이 1.7(C-) 이상이면 이수학점에 가산된다.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총 평량평균은 3.0(B0) 이상이어야 한다.

제 6 장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학위논문과 학위프로젝트 및 학위수여

제23조(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학위논문과 학위프로젝트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의 운영은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24조(학위논문 및 학위프로젝트) ① M.A.와 Ph.D.과정의 학위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위논문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M.F.A.와 D.F.A.과정의 학위논문과 학위프로젝트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위논문과 학위프로젝트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③ 석박사 통합과정의 학위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박사학위과정 관련 조항을 적용한다.

제25조(학위수여 자격) 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학위수여 자격을 가진다.

1. 제19조에서 정한 소정의 과정별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0이상인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된 자
4. 제16조에 정한 수학연한 이상을 재학하고 같은 조의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자 또는 제17조에 따라 재학연한을 연장 받아 초과학기를 등록한 자
5. 학위논문, 혹은 학위프로젝트(**학위논문 및 학위작품**) 본심사에 합격한 자
6. 과정별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 자

- 가. 석사학위과정 :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이중 1학기 이상 학위논문 혹은 학위 프로젝트 지도를 받은 자
- 나. 박사학위과정 :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최소 2학기 이상을 연구등록한 자. 그리고 교외에서 발표한 업적물(논문, 작품)이 내규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
- 다. 석·박사통합과정 : 6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최소 2학기 이상을 연구등록한 자. 그리고 교외에서 발표한 업적물(논문, 작품)이 내규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
- ② 통합과정 학생이 과정이수를 중단하는 경우 대학원 내규가 정하는 석사학위 수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학위수여) 원장은 학위수여 자격을 대학원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자 사정을 행하며,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다음과 같은 과정별 및 전공별 명칭의 학위를 수여한다.

과정	세부전공	국문학위명	영문학위명
석사	미디어문화연구	문화학 석사(미디어문화연구)	M.A.(in Media Cultural Studies)
	문화매개	문화학 석사(문화매개)	M.A.(in Cultural Mediation)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영상예술학 석사(커뮤니케이션디자인)	M.F.A.(in Communication Design)
	영화	영상예술학 석사(영화)	M.F.A.(in Cinema)
	미디어아트	영상예술학 석사(미디어아트)	M.F.A.(in Media Art)
	<삭제>	<삭제>	<삭제>
박사	미디어문화연구	문화학 박사(미디어문화연구)	Ph.D.(in Media Cultural Studies)
	문화매개	문화학 박사(문화매개)	Ph.D.(in Cultural Mediation)
	영상예술학	영상예술학 박사(영상예술학)	D.F.A.(in Visual Arts)

제26조의 2 (학위수여 취소)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학위수여 시기 및 횟수) 학위수여의 시기는 연 2회로 한다.

제28조(명예박사학위) 명예박사학위는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 문화 향상에 특수한 공적을 나타낸 자에게 수여하며, 그 절차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29조(학위기 양식)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의 학위기 양식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 7 장 연 구 과 정

제30조(연구과정 입학자격) 본 대학원 연구과정 입학자격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제31조(연구연한) 연구과정의 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제32조(실적증명) 본 대학원 연구과정을 1년간 이수하고 15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한다.

제 8 장 상 별

제33조(장학금 지급)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한다. 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시행세칙 및 내규에 따른다.

제34조(징계)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징계 할 수 있다.

제35조(징계위원회) 재학생에 대한 징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할 경우, 원장은 징계위원회를 구성, 소집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내규에 따른다.

제 9 장 조 직

제36조(직제) 본 대학원에 원장, 부원장, 그밖에 필요한 교원과 사무직원을 둔다.

제37조(분야 주임교수) 본 대학원의 제3조에 규정된 분야별로 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38조(전공 주임교수) 본 대학원의 제3조에 규정된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39조(임기) 본 대학원의 원장, 부원장, 분야별 주임교수, 전공별 주임교수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될 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0조(대학원운영위원회) 본 대학원에 커뮤니케이션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구성과 심의사항, 의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구성 :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부원장과 분야 주임교수 2인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될 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사항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입학, 퇴학과 과정의 수료 인정에 관한 사항
2. 전공과정의 설치와 폐지 및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3. 본원의 규정 등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40조의 2 (대학원위원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본교 「대학원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별도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학과(계약학과 포함) 또는 전공의 설치 • 폐지 •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2. 총 입학정원 증원 및 대학원간 정원조정 사항

3. 학위수여요건 변경 사항

4. 석사 · 박사 · 명예박사학위수여 취소 사항

5. 대학원간 통합관리 및 연계 ·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대학원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41조(겸임교수/객원교수) ① 본 대학원은 교내 · 외의 관련 학자 및 전문가를 겸임교수, 혹은 객원교수로 둘 수 있으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겸임교수/객원교수도 대학원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겸임교수/객원교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연세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세칙 및 내규에 따른다.

제42조(영상제작센터) 삭제 <2019. 03. 01>

제43조(연구소) 본 대학원은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 10 장 준 용 규 정

제44조(준용규정) 본 학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과 연세대학교 학칙 및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4항)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2호, 제26조)은 201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2호, 제26조)은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1조 제2항)은 2015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7)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제26조의 2, 제40조의 2)은 201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전 졸업생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며, 이 개정규정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8)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5조)은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제1호)은 2016년 전기 신입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1조 제2항)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1조 제3항, 제16조 제2항, 제25조 제2항 제6호)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 것으로 본다.

(1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1조 제2항, 제4항 항번호 변경, 제16조 제1항 항번호 신설)은 201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26조)은 2017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26조의 언론학 전공 삭제, 제3조 제5항의 학생정원변경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제3조 및 제26조 문화기획 전공 신설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17년 3월 1일 전에 본 대학원 언론학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칙 상 학위수여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종전과 같이 언론학 석사(M.A. in Communication)학위와 언론학 박사(Ph.D. in Communication)학위를 수여한다.

(14)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26조) 문화기획 전공에서 문화매개 전공으로의 신설 전공명 변경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시행일) 이 개정학칙 제3조 제1항(영상커뮤니케이션 전공의) 전공명 변경은 2018년 9월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영상학 분야의 구분, 제5항 학생정원변경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제3조 제4항, 제5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6조, 제9조, 제13조, 제16조, 제24조 제3항, 제25조, 제41조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 학위명 변경은 2019년 2월 학위수여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의 미디어문화연구로의 전공 변경은 대학원이 별도의 절차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전공변경 승인을 받은 자가 학칙 상의 학위수여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문화학 석사(미디어문화연구)와 문화학 박사(미디어문화연구)학위를 수여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제19조 제3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16)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3조의 2, 제42조)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42조 영상제작센터 폐지에 따라 해당업무는 신설되는 대외협력처 통합 미디어센터로 이관한다.

(17)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26조) 디자인인텔리전스 전공의 학위명 변경은 2020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18)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 19조) 디자인인텔리전스 전공의 이수학점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①항, 제3조 2호의 라, 제3조의 2 ①항 및 2호, 제26조) 디자인인텔리전스 전공 폐지와 학생정원변경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1년 3월 1일 전에 본 대학원 디자인인텔리전스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칙 상 학위수여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종전과 같이 디자인공학석사(M.S. in Design Intelligence) 학위를 수여한다.

(20)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5조)은 202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일 : 2000. 09. 01.

개정일 : 2005. 07. 15.

개정일 : 2011. 03. 01.

개정일 : 2018. 09. 01.

개정일 : 2022. 02. 0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본 대학원 학칙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수업

제2조(이수학점) **과정별 이수과목(학점)은 다음과 같으며, 온라인윤리교육(0학점)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① 학술석사(M.A.) 총 취득학점 중 전공필수는 3과목(9학점)이며, 나머지는 전공선택 및 공통선택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전문석사 (M.F.A.) 총 취득학점 중 **M.F.A.기초필수 1과목(1학점), MFA foundation(3학점)**, 전공필수 2과목(6학점)이며, 나머지는 전공선택 및 공통선택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박사학위과정

① 학술박사 (Ph.D.) 총 취득학점 중 전공필수는 4과목(12학점)이며, 나머지는 전공선택 및 공통선택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전문박사 (D.F.A.) 총 취득학점 중 **전공필수는 3과목(9학점)**이며 나머지는 전공선택 및 공통선택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석 · 박사통합과정(Ph.D.)

① 총 취득학점 중 전공필수는 4과목(12학점)이며, 나머지는 전공선택 및 공통선택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연구과정

① 총 취득학점 중 전공필수는 2과목(6학점)이며 나머지는 전공선택 및 공통선택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학기당 취득학점) 매학기 신청학점은 수강철회기간 시작 이전을 기준으로 청강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1과목 이상 최대 13학점 이내로 수강 신청할 수 있다. 단, 연구과정은 1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청강제도) 매학기 2과목까지 청강할 수 있으며, 청강과목은 수강신청서에 기재하

고 성적평가는 “이수필”(Pass:P)과 “이수미필”(nonpass:NP)로 평가하여 학적부에 기재한다.

제5조(학점인정)

1.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① 박사과정 수료를 위해 최저 60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이중 최대 30학점까지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즉 타 교육기관에서 석·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면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대상자별 수료학점 인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전공별 내규로 정한다.

③ 학점인정심사는 1학기말 이전에 이루어지고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결과를 각 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석사학위과정 학점인정

① 본 대학원의 연구과정을 마치고 석사과정에 입학했을 때에는 이미 이수한 교과과목 중 B학점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최대 9학점을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이 전적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공주임교수의 심사에 따라 최대 9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대학원간 학점교환

본 대학원 입학 후에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혹은 연세대학교의 타 전문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본대학원과 학술교류협정 및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대학원간의 학점교환도 인정한다. 단,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총 이수학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학점인정 심사기준) ① 전적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학점이 인정되는 과목은 **본 대학원 교과과정에 명시된 과목과의 충분한 유사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7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수강신청기간 내에 이수할 교과과목을 선택하여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과목철회) ① 수강과목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기간(수업일수 2/3일 이내)내에 해당과목의 담당교수, 전공주임교수, 부원장, 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수강과목 철회후의 잔여 신청과목이 최저 1과목 이상이어야 한다.

③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에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④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나, 학적부상에는 “W”(Withdraw)로 기재한다.

제11조(재수강제도) ① 등급의 상향을 원하는 과목은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② 재수강한 과목의 경우는 성적평가에 재수강 표시를 하며, 이전에 평가된 과목학

점은 학적부에서 삭제된다.

제12조(폐강) 원장은 이미 개설된 교과과목 중 수강신청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 그 과목을 폐강할 수 있다.

제 3 장 수 료

제13조(수료의 요건) ①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에서 4학기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에서 6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마치고 <삭제> 본 대학원 학칙 제19조 및 제22조의 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자격시험(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4조(수료자의 등록 및 휴학) 수료자는 석사학위과정 5학기 및 박사학위과정 7학기부터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휴학을 하거나 정규등록을 하지 않는 한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수료의 시기) 수료의 시기는 매학기 말로 한다.

제16조(수료자의 자격시험) 수료를 위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정규등록시까지 논문제출 자격시험(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수료자의 관리) 수료자의 관리는 별도로 한다.

제18조(수료자의 학위논문 및 학위프로젝트 제출) ① 수료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되는 학위논문 및 학위프로젝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학칙 제26조에 정한 학위를 수여한다.

제19조(준용) 이 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 13조)은 2020년 7월 1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전 대상자들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5) ① 이 세칙은 202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8년 9월 1일부터 제 2조 기초필수과목 폐지, 제 6조 학점인정 심사기준 개정에 관하여 시행한 사항들은 이 세칙에 따라서 시행한 것으로 본다.

3. 입학전형에 관한 내규

제정일 : 2000. 09. 01.

개정일 : 2005. 07. 15.

개정일 : 2011. 03. 01.

개정일 : 2022. 02. 04.

제 1 장 입학전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본 대학원의 학칙 제3장(입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각 학위과정별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자격)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별 입학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 가. 국내·외 정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 나. 기타 법령에 의해서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박사학위과정

- 가.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 나. 기타 법령에 의해서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석·박사 통합과정 : '석사학위과정' 지원자격에 준함

4. 연구과정 : '석사학위과정' 지원자격에 준함

5. 정원외 별도로 정함

제3조(전형방법 및 기준) ① 입학전형 방법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② 서류심사는 다음의 각 **호로** 행한다.

1. 대학 및 대학원 성적

2. 학업계획서

3. 그 밖의 각 전공에서 정하는 필수 사항

③ 구술시험은 필답시험에 준하는 수준의 객관적 선별력과 심층적 판별력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다음의 항목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1. 전공지식 및 발전가능성

2. 지원동기 및 학문관심도

제4조(선발인원) 입학전형을 통하여 선발하는 인원은 본 대학원에 배정된 정원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전형시기) 입학전형은 대학원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시기에 실시한다.

제6조(배점 및 평가) ① 입학전형의 배점은 서류심사 200점, 구술시험 100점 만점으로 한다.

1.2 <삭제>

②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이 개별적, 비공개적으로 하여 이를 평균으로 산출한 바에 의한다.

제6조의 2(합격사정) ① 각 전공 주임교수는 지원자의 심사 결과를 행정팀에 제출한다.

② 대학원운영위원회는 각 전공의 합격제청 사항을 심의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하고, 지원자의 합격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제7조(지원구비서류) **입학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이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 기일 내에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 가.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 및 사진 1매
- 나. 대학(원) 졸업증명서(학위등록번호 기재된 것) 또는 졸업 예정증명서 1부
- 다. 대학(원) 성적증명서(총평량평균기재) 1부
- 라.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2. 별도사항

가. 박사 및 통합과정의 경우 추천서 추가 제출

나. <삭제>

- 다. M.F.A. 및 D.F.A.과정의 경우 포트폴리오 추가 제출
- 라. 지원서에 기재한 해당자에 한하여 재직 및 경력증명서 제출
- 마. 현역군인의 경우 입학개시일 이전 전역 예정자로 소속 부대장이 발행한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 제출

3. 연구과정

동조 제1호의 서류 제출

제9조(준용규정) 합격사정, 등록 등 본 시행세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내규**에 적시되지 않은 구체적 사안은 내규를 통해 규정할 수 있다.

(3)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① 이 내규는 202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8년 9월 1일부터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입학전형으로 개정, 제 6조의 2 합격사정의 신설에 관하여 시행한 사항들은 이 내규에 따라서 시행한 것으로 본다.

4. 외국인학생 입학에 관한 내규(안)

제정 : 2022. 02. 0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 제 3조의 2(정원) 중 정원 외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자격) 대학원 각 학위과정 입학전형에 대한 외국인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국내·외 정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로서 한국어 또는 영어 사용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2. 박사학위과정

국내·외 정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로서 한국어 또는 영어 사용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3. 석·박사 통합과정

동조 제1호(석사학위과정)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외국인”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7항에 의한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제4조(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한다.

제5조(제출서류)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 관련 제출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입학전형시 제출 서류

가. 입학지원서(소정서식) 1부

나. 출신대학 교수 추천서 (박사 및 통합과정 필수, 석사 선택)

다.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박사학위과정 지원자는 대학졸업증명서와 대학원졸업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라. 대학성적증명서 1부(박사학위과정 지원자는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마.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1부

바. 본인 및 보호자(부, 모) 외국인 증명서 각 1부(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지원자에 한함)

사. 본인 및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1부

아. 본인 여권 사본 1부

자. 재정능력 입증서류

자. 기타 : 본 내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제출서류는 본 대학원 모집요강 및 국제처의 제반내규를 따름.

제6조(학칙 및 내규의 적용)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외국인에게는 본 대학원 학칙 및 제반 내규를 적용한다.

제7조(기타) 국제 학술 교류협력 등에 의하여 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 중 한국어 사용능력이 미흡한 학생은 우리 대학교 부속 언어연구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 본 내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과 연세대학교 학칙 및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① 이 내규는 202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2021년 9월 1일부터 이 개정 내규의 시행일 전에 외국인학생 입학에 관하여 시행한 사항들은 이 내규에 따라서 **시행한** 것으로 본다.

5. 입시 지원자 평가기준에 관한 내규

제정일 : 2005. 09. 01.

개정일 : 2011. 03. 01.

개정일 : 2022. 02. 04.

제1조(서류평가) 과정별 입시서류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 ① M.A. 및 Ph.D.과정은 대학성적 100점, 학업계획서 50점, 기타사항 50점으로 총 200점 만점으로 한다.
- ② M.F.A. 및 D.F.A.과정은 대학성적 60점, 학업계획서 40점, 포트폴리오 60점, 기타 사항 40점으로 총 200점 만점으로 한다.

제2조(면접평가) 입시면접의 평가는 전공관련지식 50점, 전공적성 및 적합도 50점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한다.

제3조(대학성적 평가) 입시서류 평가중 ‘대학성적’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요건들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의미한다

1. 학사학위 취득 교육기관의 수준 및 성격
2. 학사학위 취득 전공의 적합성 및 수강 과목의 성격
3. 학사과정의 총 평량평균
4. 본대학원 지원 전공과 관련된 수강 과목의 평량평균

제4조(학업계획서 평가) 입시서류 평가중 ‘학업계획서’라 함은 다음과 같은 요건들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의미한다.

1. 학업계획서의 체계성
2. 학업계획서 내용에 나타나는 전공 관련 지식의 깊이
3. 학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4. 지원 전공의 교과과정과 학업계획서 내용과의 합치성

제5조(추천서 평가) 삭제

제6조(추천서 평가 감점) 삭제

제7조(기타사항) 입시서류 평가 중 **‘기타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요건들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의미한다.

- ① 실무경력 평가: 지원 전공과 관련된 기술적 · 예술적 능력을 평가~~한다~~. (단, 이 조항은 **M.F.A** 지원자에 한함) 또한 지원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업 경력의 시기 및 기간, 현업 경력과 지원 전공의 교과과정과의 합치성을 평가~~한다~~.
- ② 추천서 : 추천서는 추천인의 신뢰도, 추천 내용의 진실성, 추천 내용에 근거한 지원자의 총체적 능력을 평가한다. 단, 추천인 외의 사람에 의해 그 내용이 작성된 경우, 추천인의 서명이 위조되거나 추천인의 인지 없이 날인된 경우, 추천인

이 지원자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킴으로써 추천 내용의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경우에는 지원자의 추천서 관련 평가는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다.

③ 자격증 및 수상경력 평가 : 지원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및 수상경력을 평가한다. 지원 전공의 교과과정과 상관관계가 없는 자격증이나 수상경력은 부분적, 간접적으로만 평가에 반영한다.

제7조의 2(포트폴리오) 입시서류 평가중 ‘포트폴리오’라 함은 다음과 같은 요건들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의미한다.

1. 포트폴리오의 기술적·예술적·창의적 수준
2. 포트폴리오의 성격과 지원 전공 교과과정과의 합치성

제8조(전공지식 평가)

입시면접 평가중 ‘전공관련지식’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요건들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의미한다.

1. 지원 전공에 대한 폭넓은 지식의 범위
2. 입학 후 공부하고자 하는 세부 분야에 대한 지식의 깊이
3. 전공분야 학습에 필요한 기술적 차원의 기본 소양 ④ 사고의 통찰력 및 체계성

제9조(전공적성 평가)

입시면접 평가중 ‘전공적성 및 적합도’라 함은 다음과 같은 요건들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의미한다.

1. 뚜렷한 지원 동기의 체계적 표현
2. 지원 전공과 관련된 사회문화현상에 대한 개인적 관심도
3. 학문을 대하는 태도의 진지함

부 칙

(1) 이상의 내규는 2003년 9월 1일부터 유효하며, 원장 및 전임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수정이 가능하다. 단, 본 내규는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아니하며, 본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내용이 내규에 적시된 내용보다 우선한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2018년 9월 1일부터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 2항 개정 내규는 이 내규에 따라서 시행한 것으로 본다.

6.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관한 내규

제정일 : 2000. 09. 01.
개정일 : 2005. 07. 15.
개정일 : 2011. 03. 01.
개정일 : 2016. 09. 01.
개정일 : 2017. 06. 02.
개정일 : 2017. 09. 01.
개정일 : 2018. 09. 01
개정일 : 2020. 07. 11
개정일 : 2021. 08. 05
개정일 : 2022. 02. 0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학칙 제23조에 의거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종합시험 **<삭제>**

제2조(응시자격) ① **학칙 제 9조(등록학생의 권한)와 관련, 종합시험에 응시가능한 자는 등록한 자로 휴학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종합시험에 응시하는 각 과정의 학생은 총평량평균이 3.00 이상이어야 하며, 전 공별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가. M.A.과정 : 3학기 이상 이수,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나. M.F.A.과정 : 2학기 이상 응시가능한 학위프로젝트 프로포절에 합격 시 종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

2. 박사학위과정

가. Ph.D.과정 : 4학기 이상 이수, 54학점 이상 취득한 자

나. D.F.A.과정 : 4학기 이상 이수, 54학점 이상 취득하였으며, 학위프로젝트 프로포절에 합격한 자

3. 석 · 박사통합과정 : 6학기 이상 이수, **48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④ 삭제

제3조(**진행**시기 및 응시절차) 종합시험은 연 2회 실시하며, 응시원서를 기일 내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응시절차) 삭제

제5조(출제과목) ① 전공 및 과정별 출제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언론학 전공 : 삭제

2. 영상커뮤니케이션 전공

가. 석사학위과정: 영상학이론, 연구방법론(질적, 양적연구방법론 중 택1), 세부전공

나. 박사학위과정 : 영상학이론, 질적연구방법론, 양적연구방법론, 세부전공

(단, 영상학이론과 연구방법론은 프로포절 전 응시, 세부전공은 프로포절 후 응시)

3. 미디어문화연구 전공

가.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 미디어문화이론, 미디어문화연구방법론, 학술논술

4. 문화매개 전공

가. 석사학위과정 : 세부전공, 학술논술

나. 박사학위과정 : 세부전공, 학술논술, 문화매개연구방법론

5. 영상예술학 전공 : 공통(전공필수)영역, 논문주제영역

② 문화매개 전공의 ‘세부전공’ 과목은 응시학생이 특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미디어문화연구와 문화매개 전공의 ‘학술논술’은 전공의 필독서 목록과 연계되어 출제된다. 이 목록은 학생들에게 별도로 공지되며, 전공교수들 간의 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제6조(출제범위)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제7조(출제위원) 종합시험 출제 및 채점은 각 전공별 출제위원회가 담당한다. 각 전공별 출제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삭제

② M.A. 및 Ph.D. 과정은 2인 이상의 전임교수를 포함하는 종합시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출제와 채점 등을 관리한다.

③ D.F.A과정은 전공필수영역은 전공주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전임교수가 출제한다.

제8조(합격기준) 종합시험은 각 영역별 100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판정한다.

제9조(재응시) 종합시험 응시과목 중 낙제과목이 있는 자는 그 과목을 재응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외국어시험

제10조(인정범위) ① 외국어시험은 ‘공인된 영어능력시험(TOEFL, TOEIC, TEPS, IELTS)’ 성적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② 위 1항 외에 2017년 9월 1일부터 교내 외국어학당에서 시행하는 ‘대학원 외국어 자격시험 영어 대체강좌’ 이수증명서(성적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외국어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제출시기) ①, ② 삭제

③ (입학년도 삭제) 학위논문 또는 학위작품의 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본심사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외국어 성적을 제출하거나 제출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합격기준) 외국어 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M.A./Ph.D./D.F.A.	M.F.A/M.S
TOEFL	PBT	<삭제>
	CBT	<삭제>
	IBT	85
TOEIC	750	630
NEW TEPS	285	237
IELTS	6.5	5.5
대학원 외국어자격시험 영어 대체강좌	위에 상응하는 점수의 반에 배치	위에 상응하는 점수의 반에 배치

제13조(유효기간) 외국어시험 성적표의 유효기간은 제출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로 제한한다.

제14조(면제기준)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후 외국어시험 성적 제출을 면제한다.

1. 입학지원 시 2년 이내 및 기준 점수 이상의 성적을 제출한 자
2. 본교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3년 이내에 박사과정에 진학한 자
3. 학부, 석사, 박사 중 하나 이상의 과정을 영어권 국가에서 마친 자
4. 영어가 법정공용어인 국가의 국적 소유자면서, 3년 이상의 정규교육을 영어로 이수한 외국인

부 칙

-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내규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1조 제3항)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한다.
- (5)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0조 제1항 항번호 신설)는 2017년 6월 2부터 시행하고,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 대학원 외국어자격시험 영어대체강좌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 12조)는 2020년 9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단,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재적생은 개정 전, 후 외국어 시험 합격기준 중 본인이 원하는 합격 기준 점수를 적용받을 수 있다.

(7)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 12조 NEW TEPS점수 개정 및 외국어 시험 성적의 삽제)는 2021학년도 1학기 기준 재적생과 2021년 9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8) ① 이 내규는 202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8년 9월 1일부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종합시험 응시자격 및 출제과목 등의 개정, 제11조 외국어시험 제출시기의 개정(입학년도에 관계없이 모든 전공 동일) 제14조 입학 후 외국어시험 성적 제출 면제 기준의 개정에 관하여 시행한 사항들은 이 내규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7. M.A. / Ph.D. 과정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정일 : 2000. 09. 01.

개정일 : 2005. 07. 15.

개정일 : 2011. 03. 01.

개정일 : 2018. 09. 01.

개정일 : 2022. 02. 0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학칙 제24조 ①의 학위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내규**는 학술석사 및 박사 (M.A. 및 Ph.D.) 과정에만 적용된다.

제2조(학위논문제출자격) 학위논문 예비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석사학위과정은 1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2학기 이상 지도를 받은 자에 한한다. 기타 요건은 내규에 따른다.

제3조(학위논문성격) 각 학위과정에 있어 그 성격은 다음과 같다.

- ① 석사학위과정: 전공분야에 대한 견실한 기본지식이 밑바탕이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다루는 주제가 학술적 타당성이 있게 조직되고 서술되어야 한다.
- ② 박사학위과정 : 취급하는 분야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적 지식을 소지하고 있고 독자적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고 기존지식 또는 기술을 상당한 정도 수정 또는 확대하고 논지가 분명한 내용이어야 한다.

제 2장 프로포절, 논문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제4조(논문지도교수 자격) 본 대학원의 전임교수는 <삭제>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제5조(**프로포절 및 지도교수 배정**) ① 종합시험 합격 후 프로포절 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종합시험 응시자격 및 합격기준은 별도의 내규를 따른다.

② 프로포절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프로포절 신청서(지도교수 신청 및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참고하여 전공주임교수는 논문 지도교수를 결정한다.

제6조(심사위원 배정) 프로포절에 통과한 자에 한하여 전공주임교수와 논문지도교수의 협의를 통해 논문 심사위원이 배정된다.

제7조(심사위원 선정방법 및 기능) 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논문의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위촉한다.

제8조(심사위원회구성 및 변경) ① 심사위원은 석사학위논문인 경우 3인, 박사학위논문인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한다.

- ② 논문지도교수는 주심을 담당한다.
- ③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까지는 외부인사(커뮤니케이션대학원 소속 전임 또는 비전임교원 아닌 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
- ④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외부인사는 논문 주제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관련 전문가여야 한다.

제9조(심사위원장) ①② <작제>

제 3 장 학위논문 제출

제10조(학위논문체제) 학위논문의 체제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논문편제) 논문편제 및 서술방식은 기본적으로 연세대학교 논문작성법 편찬위원회편, “연세대학교 대학원 새논문작성법”(연세대학교 출판부 발행)에 따른다. 단, 인용과 참고문헌표기는 미국 APA 양식을 변용한 커뮤니케이션학계의 공동표기법에 따른다.

제 4 장 학위논문 예비심사

제12조(제출방법) 학위논문작성자는 예비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수만큼의 원고를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심사방법)
 - ①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면밀히 검토한다.
 - ② 전공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각 전공별로 비공개 학술발표회를 통하여 1회 이상 논문을 발표할 수 있다.
 - ③ 심사위원은 <작제> 논문발표자에게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 ④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통합하여 소정기일 내에 예비심사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판정)

- ① 논문예비심사에 있어서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주제의 타당성, 취급방법의 타당성, 연구성과 등을 엄밀히 심사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한다.

- ② 논문이 부실하여 당해 학기 내에 완성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할 때에는 논문의 본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할 수 있다.
 - ③ 판정은 가, 부로 평가한다.

제 5 장 학위논문 본심사

제15조(제출방법)

- ① 학위논문작성자는 본심사를 위하여 원고를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위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심사방법)

- ①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전공주임교수가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심

사위원이 행한다.

- ② 논문을 제출한 학생이 전항에서 정한 시간에 심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동의 하에 추후에 심사할 수 있으나,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학위논문의 심사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분, 역본 또는 모형, 기타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
- ④ 전공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각 전공별로 공개 학술발표회를 통하여 1회 이상 논문을 발표할 수 있다.
- ⑤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논문발표자에게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논문의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제상 학위 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가를 판정한다.
- ⑥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소정의 기일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7조(심사판정) 학위논문의 심사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석사학위논문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2인 이상, 박사학위논문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4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제18조(재심사) 학위논문 본심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심사용 논문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 심사받을 수 있다.

제19조(제출부수) 완성된 학위논문은 소정기일 내에 행정팀과 유관부서에 제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200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① 이 내규는 202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8년 9월 1일부터 제5조 프로포절 및 지도교수 배정, 제6조 심사위원배정, 제8조 ②항 논문지도교수의 역할 변경, ③항 외부인사의 범위 확대, 제 9조 심사위원장 식제, 제11조 논문편제의 개정에 관하여 시행한 사항들은 이 내규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8. Ph.D. 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일 : 2005. 09. 01.

개정일 : 2011. 03. 01.

개정일 : 2022. 02. 0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 제3조(전공) ①항 중 학술박사(Ph.D.) 과정의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시기) 삭제

제3조(합격기준) 외국어 시험에 관한 사항은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조(필수과목) 다음과 같이 총 4과목(12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 미디어문화연구 전공: “미디어문화연구의 이해”, “미디어문화연구박사세미나”, “질적연구방법론”, “문화와 사회”
- 문화매개 전공: ‘문화매개이론’, ‘문화매개연구방법론’, ‘문화매개박사세미나’, ‘문화와 사회’

제5조(학사지도교수) 모든 신입생은 등록 첫 학기의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학사지도교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학사지도교수’는 ‘논문지도교수’가 정해질 때까지 각 학생의 수강신청 및 학사업무를 지도할 의무가 있다. 별도의 선정절차가 없을 경우, 전공주임교수가 ‘학사지도교수’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6조(지도교수신청) 4학기를 이수하고 51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논문지도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전공주임교수가 지도교수를 결정한다.

제7조(학사지도) ‘논문지도교수’가 확정된 학생은 이후 수강신청 및 학사업무 전체를 논문지도교수와 협의하여 결정, 진행하여야 한다.

제8조(조번호 누락)

제9조(인정범위) 각 학생은 박사과정의 수료를 위해 60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이중 최대 30학점까지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즉 타 교육기관에서 석·박사과정을 이수하면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본 대학원 학칙 제19조 및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참조).

제10조(신청시기) 각 학생은 1학기 말 이전에 학점인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 대학원은 2학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그 결과를 각 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인정평점) 본 대학원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과 본 대학원 개설과목의 충분한 유사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해

당 과목 학점이 B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과목의 유사성 판단은 전공교수들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학생은 교수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적 대학원의 관련 과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인정과목) <삭제>

제13조(결정권한) 각 신청자의 전적 대학원 수료학점 인정여부와 범위는 전공 주임교수 와 부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의 2(연구방법론) '미디어문화연구' 전공 입학자의 경우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양적 연구방법론 관련 과목을 한 과목 이상 공식 청강 혹은 수강하여야 한다. 학부나 석사 과정에서 이미 공식 청강 혹은 수강한 전력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 제출을 통해 이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제14조(학술평가) 모든 학생은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이전까지 교외에서 일정 수 이상의 논문을 발표해야 하며, 그 평점은 본대학원의 산출방식에 의거, 제16조에 규정한 학술평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학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휴학기간을 포함, 논문 제출시까지 기준 학술평점을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학위논문 본심사를 가질 수 없다. 본 대학원의 학술평가 평점표는 연세대학교 교무처의 업적점수 산출방식을 근간으로 하여 일부 수정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업적내용	평점	비고
논문	국내 1등급	150점	※ 등급 구분은 교무처 기준에 따름. 단, 전공주임교수와 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교무처 목록에 없더라도 등급 판정 가능함.
	국내 2등급	100점	
	국내 3등급	70점	
	국내 4등급	30점	
	국제 1등급	400점	
	국제 2등급	210점	
	국제 3등급	100점	
	국제 4등급	30점	
저술	전문연구서	150점	※ 교무처 기준표를 단순화하고 '교과서' 항목 제외했음
	교양학술서	100점	※ 저술 종류의 최종판정은 전공주임교수와 부원장이 담당함.
	학술번역서	100점	※ '기타저작물'의 경우 저술 성격상 70점 이하를 부여할 수 있음
	기타 저작물	70점	

제15조(평가기준) 평점 산출시 공저인 경우 2인은 70%, 3인은 50%, 4인은 40%, 5인 이상은 30%로 계산한다.

제16조(평점기준) 졸업에 필요한 학술평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따로 정한다.

1. 삭제

2. 2005년-2015년 9월 입학자까지 : 150점

3. 2016년 3월 입학자부터- : 250점(국내 1등급 이상 학술지 논문 반드시 한 편 이상 포함)

제17조(확인서 제출) 박사학위 논문을 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본심사 전 소정의 기간 동안 ‘학술평가 확인서’를 작성, 논문지도교수와 부원장의 날인을 받아 행정팀에 제출해야 한다.

부 칙

(1) 이상의 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유효하며, 원장 및 전임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수정이 가능하다. 단, 본 내규는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아니하며, 영상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내용이 내규에 적시된 내용보다 우선한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① 이 내규는 202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8년 9월 1일부터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의 개정 내규는 이 규정에 따라서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 13조의 2 중 2017년 이후 박사 입학자의 연구방법론 과목 이수, 제16조 중 2016년 3월 입학자부터 졸업에 필요한 학술평점 개정에 관하여 시행한 사항들은 이 내규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9. M.A. 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 2022. 02. 0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 제3조(전공) ①항 중 학술석사(M.A.)과정의 세부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필수과목) 다음과 같이 3과목(9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1. 미디어문화연구 전공 : ‘미디어문화연구의 이해’, ‘미디어문화연구석사세미나’, ‘질적 연구방법론’

2. 문화매개 전공: ‘문화매개이론’, ‘문화매개연구방법론’, ‘문화매개석사세미나’

제3조(인턴십) 문화매개 석사과정은 졸업 전까지 반드시 ‘인턴십’을 이수해야 한다. 인턴십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완수해야 한다.

1. 교외 인턴십 : 전공과 유관한 교외의 기관, 조직, 기업에서 100시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최종결과물 혹은 그 기록물이나 증빙자료를 보고서와 함께 제출

2. 교내 인턴십 : 본 대학원 내의 M.F.A./D.F.A. 전공자와 **학위작품**을 기획하거나 공동제작하여 그 최종결과물 혹은 그 기록물이나 증빙자료를 보고서와 함께 제출 단, 기획 혹은 공동으로 제작한 내용과 결과는 공동 작업에 참여한 각 전공자 모두 학위 작품 제출물 혹은 논문에 각자의 역할과 분담 작업 내용을 명시하여 제출

제4조(인턴십 면제) 위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입학 전에 전공과 유관한 충분한 경험과 경력을 쌓았다고 판단될 경우 졸업요건에서 인턴십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를 희망하는 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 학기말 전 정해진 기간에 면제신청원을 작성하여 전공주임교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제 5조(심사방법) M.A.과정의 학위논문 심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프로포절, 본심사 : 공개심사(대상자, 심사위원, 재학생 참여)

2. 예비심사 : 비공개 심사(대상자, 심사위원 참여)

제 6조(준용규정) 본 내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M.A.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를 따른다.

부 칙

(1) ① 이 내규는 202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8년 9월 1일부터 이 내규의 신설로 인하여 시행한 사항들은 이 내규에 따라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0. M.F.A. / D.F.A. 과정 학위프로젝트에 관한 내규

제정일 : 2000. 09. 01.

개정일 : 2005. 07. 15.

개정일 : 2011. 03. 01.

개정일 : 2022. 02. 0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학칙 제24조 ②의 학위논문 및 학위작품("학위프로젝트"라 칭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내규는 전문석사 및 박사(M.F.A. 및 D.F.A.) 과정에만 적용된다.

제2조(제출자격) 학위논문 및 학위작품 예비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학위프로젝트연구 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학위프로젝트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석사학위과정은 1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2학기 이상 지도를 받은 자에 한한다. 기타 요건은 내규에 따른다.

제3조(학위프로젝트) 각 학위과정에 있어 그 성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 학위프로젝트 : 학위논문과 학위작품으로 구성된다. 학위프로젝트는 전공분야에 대한 견실한 기본지식과 전문성이 밑바탕이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학위논문에 있어서는 다루는 주제가 학술적 타당성이 있게 조직되고 서술되어야 한다.
2. 박사 학위프로젝트 : 학위논문과 학위작품으로 구성된다. 학위프로젝트는 연구하는 분야에 대하여 충분한 미학적 고찰과 전문적 지식을 나타내야 한다. 학위논문은 학위프로젝트에서 다룬 분야에 대한 독자적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고, 기존지식 또는 기술을 상당한 정도 수정 또는 확대하고 논지가 분명한 내용이어야 한다.

제3조의 2(학위프로젝트 프로포절) 학위프로젝트 프로포절(이하 '프로포절')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기일 내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프로포절은 정해진 시기에 연 2회 실시한다.

제 2 장 학위논문 및 학위작품 지도와 심사

제4조(지도교수 자격) 본 대학원의 전임교수 및 본 대학교의 관련 분야 전임교수는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제5조(지도교수배정)

① 석사학위과정

학위논문과 학위작품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기 이후에 <프로포절 신청서(지도교수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를 행정팀에 제출하고, 프로포절을 발표해야 한다. 발표방식과 합격기준은 내규에 따르며, 프로포절에 합격한 학생에 한해 전공주임교수

가 학위프로젝트지도교수를 결정한다.

② 박사학위과정

학위논문과 **학위작품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4학기 이후에 <프로포절 신청서(지도교수 신청 및 연구계획서)>를 행정팀에 제출하고, 프로포절을 발표해야 한다. 발표방식과 합격기준은 내규에 따르며, 전공주임교수가 학위프로젝트지도교수를 결정한다.

③ D.F.A. 과정의 경우, 학위프로젝트지도교수를 2인이 공동으로(co-advisors) 맡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도 공동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제6조(지도교수변경)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모두 프로포절 통과 후 1회에 한하여**, ‘학위프로젝트지도교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 전후의 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제출한다. 이외에는 해당 교수의 유고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학위프로젝트지도교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제목변경) 프로포절에 합격한 이후 학위논문이나 **학위작품**의 제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위프로젝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위프로젝트 제목변경원>을 예심일 이전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순한 제목의 변경이 아니라, 학위프로젝트의 진행 주제와 내용이 상이하게 변경될 경우, 이미 프로포절에 합격하였더라도, 학위프로젝트지도교수는 프로포절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회배정) 프로포절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박사과정은 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가 협의하여, 석사과정은 **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을 배정한다.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지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추인한다.

제9조(심사위원회선정방법 및 기능) 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학위프로젝트의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위촉한다.

제10조(심사위원회구성 및 변경) ① 심사위원은 석사 학위프로젝트인 경우 3인, 박사 학위프로젝트인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한다. 박사학위과정의 심사위원 5인 중 최소 3명은 반드시 본교 전임교수로 구성된다.

② **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는 주심을 담당한다.**

③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삭제>중 2인까지는 외부인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외부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석사 학위프로젝트 외부심사위원**: 프로젝트 주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관련 전문가
2. **박사 학위프로젝트 외부심사위원**: 교육부가 학력을 인정하는 대학교(대학포함) 전임 교수 이상 또는 대학원장이 **승인**한 비전임교원 및 현업 전문가
- ④ 부득이한 이유로 학위프로젝트 본심사 이전에 심사위원을 변경할 경우, 전공주임

교수와 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심사위원회(안)을 제출한다. <삭제>

제11조(심사위원회) ① ② <삭제>

제 3 장 학위논문 및 **학위작품** 제출

제12조(**학위작품** 유형) **학위작품**의 체제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영상물 : DVD 등 지도교수가 승인하는 보편적인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
2. 전시 : 전시도록과 영상 혹은 사진 기록을 제출
3. 기획 : 기획의 진행경과와 최종결과를 기록하여 제출
4. 기타 : 보관에 적절한 매체를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선택하여 제출

제13조(학위논문체제) 학위논문의 체제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학위논문편제) 학위논문편제 및 서술방식은 연세대학교 논문작성법 편찬위원회 편, “연세대학교 대학원 새논문작성법”(연세대학교 출판부 발행)을 참조한다. 단, 인용과 참고문헌표기는 미국 **Chicago** 양식을 변용한 인문예술학계의 공동표기법에 따른다.

제 4 장 학위논문 및 **학위작품** 예비심사

제15조(제출방법) 학위논문 및 **학위작품** 작성자는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및 학위작품 결과물을** 심사위원의 수만큼을 준비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위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심사방법) ①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학위논문원고와 **학위작품**을 면밀히 검토한다.
②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학위프로젝트발표자에게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통합하여 소정기일 내에 예비심사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심사판정) ① 학위프로젝트 예비심사에 있어서 심사위원은 제출자의 연구태도, 연구 및 학위프로젝트 주제의 타당성, 취급방법의 타당성, 연구성과 등을 엄밀히 심사하고, 수정 ·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한다.
② 학위논문이나 **학위작품**이 부실하여 당해 학기 내에 완성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할 때에는 학위프로젝트의 본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할 수 있다.
③ 판정은 가, 부로 평가한다.

제18조(**프로포절과의 연계성**) 학위논문 및 **학위작품** 프로포절에 합격한 내용과 예비심사 발표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이 양자가 현저하게 상이할 경우, 심사위원회는 학위논문 및 학위작품 작성자에게 프로포절부터 다시 하라고 판정할 수 있다.**

제 5 장 학위논문 및 **학위작품** 본심사

제19조(제출방법) 학위논문 및 **학위작품** 작성자는 본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및 학위작품 결과물을** 심사위원의 수만큼을 준비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위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심사방법) ① 학위프로젝트의 본심사는 **심사위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심사위원이 행한다.

② 학위논문과 **학위작품을** 제출한 학생이 전항에서 정한 시간에 심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동의 하에 추후에 심사할 수 있으나,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위프로젝트의 심사상 필요할 때에는 학위논문 및 **학위작품** 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기타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학위프로젝트 발표자에게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학위프로젝트의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제상 학위프로젝트로서의 결함이 있는가를 판정한다.

⑤ 학위프로젝트의 본심사는 소정의 기일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21조(심사판정) 학위프로젝트의 심사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석사 학위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2인 이상, 박사 학위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4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제22조(재심사) 학위프로젝트 본심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1학기 이상 경과한 후(단, 재학연한이 남아 있는 경우) 심사용 학위논문과 **학위작품을** 다시 제출하여 심사받을 수 있다.

제23조(제출부수) 본심사에 합격한 M.F.A. / D.F.A. 과정생은 완성된 학위논문 및 **학위작품을** **소정기일** 내에 **행정팀과 유관부서에 제출한다.** 행정팀에 제출할 때는 작품 DVD 혹은 제12 조의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상응하는 작품결과물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200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① 이 **내규**는 202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8년 9월 1일부터 제1조 “학위프로젝트”를 “학위프로젝트(학위논문 및 학위작품)”으로 개정, 제2조, 제3조, 제2장 제5조 및 제7조, 제3장 제12조, 제4장 제 15조 및 제16조 및 제17조 및 제18조, 제5장 제19조 및 제20조 “학위프로젝트”를 “학위작품”으로 개정에 관하여 시행한 사항들은 이 **내규**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③ 2018년 9월 1일부터 제3조의 2 신설, 제6조 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 변경 관련, 제7조 합격 후 프로포절 재심사, 제10조 ②항 논문지도교수의 역할 변경, 제14조 인용과 참고문헌표기법 개정에 관하여 시행한 사항들은 이 내규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11. D.F.A. 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 2008. 11. 01

개정: 2011. 03. 01

개정: 2016. 09. 01

개정: 2020. 00. 00

개정: 2022. 02. 04

제1장 지도교수 선정

제1조(학사지도교수) **D.F.A. 전공주임교수는 모든 신입생의 학사지도교수 역할을 수행한다.** ‘학사지도교수’는 ‘프로젝트지도교수’가 정해질 때까지 각 학생의 수강신청 및 학사업무를 지도한다.

제1조의 2(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 제3조(전공) ①항 중 전문박사(D.F.A.) 과정의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 **D.F.A. 과정 3학기 이상은** 논문의 세부 주제와 학위 작품의 제작 기획이 명시된 **<프로포절 신청서(지도교수 신청 및 연구계획서)>**를 행정팀에 제출해야 하며, 이 때 희망하는 ‘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를 명시해야 한다. **단, 당해 학기 기준 3학기 이상 학생이 현재까지 학위 프로젝트 지도교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학기 <프로포절 신청서(지도교수 신청 및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의 선정) 부원장은 D.F.A. 과정 학생의 4학기(등록기준)가 시작되기 전에 ‘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를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 확정한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를 2인이 공동으로(co-advisors) 맡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도 공동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제4조(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의 역할) ‘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가 확정된 학생은 수강신청 및 ‘학위프로젝트 프로포절’의 준비를 포함한 학사업무를 ‘학위 프로젝트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5조(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의 변경) D.F.A. 과정 학생은 **프로포절 통과 후 1회에 한하여 ‘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 전후의 지도교수와 D.F.A. 주임교수가 협의하여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의 변경을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이외에는 해당 교수의 유고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프로젝트 지도교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2장 타 교육기관의 취득학점 인정

제6조(전적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D.F.A. 과정** 학생은 **D.F.A. 과정**의 수료를 위해 60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이중 최대 30학점까지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즉 타 교육기관에서 석·박사과정을 이수하면서 취득한 학점으로(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학칙 제19조 및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참조).

제7조(학점인정 절차) D.F.A. 과정 학생은 등록 후 첫 학기에 전적 대학원 취득학점의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D.F.A. 전공주임교수는 2학기 수강신청 전에 그 결과를 해당 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학점인정 조건)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 명이 본 대학원의 과목명과 유사해야 하며, 해당 과목 학점이 B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학점인정 과목) 학점이 인정되는 과목은 본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의 교과과정에 명시된 과목에 한한다(본교의 타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과 유사한 것으로는 학점을 인정 받을 수는 없다). 단, D.F.A. 과정의 전공필수과목은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으로 대치될 수 없다.

제10조(학점 불인정 과목) 커뮤니케이션대학원의 교과과정에 명시된 과목이라 하더라도, 해당 학생의 전공 및 학업계획과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D.F.A. 주임교수는 그 학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학점인정 결정) 각 신청자의 전적 대학원 수료학점 인정여부와 범위는 D.F.A. 주임교수가 학사지도교수 및 부원장과 협의 아래 결정하며 원장의 재가를 받는다.

제3장 학위수여에 필요한 학술평가 요건

제12조(필수 학술평점) ① 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들은 입학한 이후부터 박사학위논문과 **작품을** 제출하기 이전(휴학기간 포함)까지 교외에서 일정 수 이상의 작품이나 논문·저술을 발표함으로써 필수 학술평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업적별 학술평점은 별표1과 별표2에 따르고, 입학년도별 학술평점 취득기준은 제15조에 따른다.

③ 취득평점 총점이 제15조의 기준에 미달될 경우 학위프로젝트 본심사를 받을 수 없다.

④ 2009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입학생까지는 제1항의 필수 학술평점 취득 시, 반드시 학진등재(후보)지에 게재된 1편 이상의 논문 점수 혹은 전문연구서 1편의 저술 점수를 포함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2016년 9월 입학생부터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⑤ 2018년 9월 입학생부터는 제1항의 필수 학술평점 취득 시, 반드시 학진등재(후보)지에 게재된 1편 이상의 논문 점수 혹은 전문연구서 1편의 저술 점수를 포함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별표 1> 논문 발표

구분	업적 내용	평점	비고
논문	국내 1등급	150점	※ 이전 입학자-2016년 3월 입학자 : 제시된 논문평점 부여
	국내 2등급	100점	2016년 9월 입학자 - 2018년 3월 입학자 : 제시된 논문평점에 두 배 점수 부여
	국내 3등급	80점	2018년 9월 입학자부터 : 제시된 논문 평점 부여
	국내 4등급	30점	
	국제 1등급	400점	예> 2016년 3월 입학생이 국내 1등급 논문을 작성하였을 경우 : 150점
	국제 2등급	210점	2016년 9월 입학생이 국내 1등급 논문을 작성하였을 경우 : 300점
	국제 3등급	100점	2018년 9월 입학생이 국내 1등급 논문을 작성하였을 경우 : 150점
	국제 4등급	30점	※ 나머지 저술 및 작품 등은 최초와 동일함.
저술	전문연구서	150점	※ 교무처 기준표를 단순화하고 '교과서' 항목 제외했음
	교양학술서	100점	※ 저술 종류의 최종판정은 전공주임교수와 부원장이 담당함.
	학술번역서	100점	
	기타 저작물	70점	※ '기타저작물'의 경우 저술 성격상 70점 이하를 부여할 수 있음
학술발표	학회논문/포스터 발표 (국제/국내)		20/10

*非논문이란, 논문의 형태를 갖추지는 않았으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출판물에 게재된 다양한 형태의 글을 의미한다. 단, 그 내용은 게재자의 전공과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별표 2> 작품 발표

구분	업적 내용	평점	비고
전시	공인 예술사회단체 공모/시상, 당선/수상작	200	
	사설 예술사회단체 공모 수상권입상	160	
	저명 갤러리 초대 개인전	200	
	기타 공인된 기관에서 주최하는 초대 전시	150	
공연 및 퍼포먼스	공연예술(영상퍼포먼스/연극/무용/퍼포먼스/뮤지컬등) 연출 대극장(800석 이상)/중극장(400석 초과 800석 미만)/ 소극장(400석 미만)	200/150/100	
	기획, 극/각본, 영상, 안무 (위 항목의 분류기준에 따른 기준 점수의 50% 적용함)	100/75/50	
	미술, 의상, 조명 (위 항목의 분류기준에 따른 기준 점수의 30% 적용함)	60/45/33	
영상예술	영화연출 (국내/외 초청 상영/전시)	150	
	디지털 영상 매체작품 (게임, 웹사이트, 모션 그래픽스, 기획 및 디자인, 애니메이션 장편/중편/단편 등)	150	
	방송프로그램 (공중파 및 지상파 방송) 드라마, 다큐멘터리, 시사교양 연출	200	
	방송프로그램 (공중파 및 지상파 방송) 드라마, 다큐멘터리, 시사교양 시나리오, 촬영, 편집, 기획	100	
기획	전시/공연 대규모행사 총괄기획, 예술총감독 (국내외 광역자치단체, 언론기관, 공공문화재단 규모)	200	
	전시/공연 대규모행사 총괄기획, 예술총감독 (국내외 전문화랑 규모)	100	
기타	공연, 전시, 상영 등의 형태는 갖추지 않았으나 전공과 관련된 창작활동	120/100/80	※ 작품의 성격에 따라 점수부여

제13조(학술평점 산출방식)

- ① 평점 산출시, 모든 실적은 신작에 대해서만 점수를 인정한다.
- ② 전시, 퍼포먼스 및 공연의 경우, 상기 점수는 기관 초청 전시나 기관 초청 공연을 기준으로 하며, 대관 전시나 대관 공연은 상기 점수의 50%를 반영한다. 상기 내용 중 게임, 웹사이트, 모션 그래픽스 작품의 경우, 총괄 기획은 100%, 작품 제작 및 디자인 작업의 경우 저자수 비율(논문 저자수 적용과 동일)을 반영한 후 본 평점의 70%를 산정한다.
- ③ 창작물이 공동작업인 경우, 논문 발표에서의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와 같은 역할로서 작품 창작의 역할이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자수가 2인인 경우는 점수 기준의 70%를 적용한다. 그 외 공동저자수가 3-4인 경우 기준 점수의 50%, 5인 이상의 경우 기준 점수의 30%를 산정한다.

제14조(평가확인서 제출) 박사학위 작품과 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학생은 관련자료와 함께 ‘학술 및 작품활동 평가확인서’를 작성하여 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행정팀에 제출해야 한다. 모든 창작물의 경우 다음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시, 공연, 페스티벌 등에 주최 측에서 선정하여 초정된 경우, 개별초청장 등 인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증빙자료.
2. 전시 분야 증빙자료: 주최 기관과 장소, 참여자 이력, 작품 소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카탈로그 등의 자료.
3. 전시 공연 총괄 기획 분야 증빙자료: 주최 기관, 전체 사업규모 및 내용, 참여자의 역할과 참여 범위, 프로젝트의 목적 및 사업 내용이 증빙될 수 있는 자료.
4. 창작 공연분야 증빙자료: 주최 기관 및 장소, 사업 내용, 관람객 수 등의 공연장 규모, 참여자의 역할과 참여 범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카탈로그 등 및 관련 참조할 수 있는 언론 및 보도자료.
5. 이상 증빙자료는 physical catalogue로 제출하거나 혹은 주최기관에서 공식 발행한 physical 자료집이 digital로 만들어졌을 경우, 이에 대한 digital copy 버전이나 web page 등의 자료를 출력한 이미지나 pdf 자료를 인사위원회에 검토를 받아 제출

제15조 (학술평점 적용기준) 졸업에 필요한 학술평점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 4호 : 삭제
5. 2006년 - 2016년 3월 입학자 : 150점
6. 2016년 9월 입학자 - 2018년 3월 입학자 : 300점 <별표 1에 제시된 논문평점에 2배 부여>
7. 2018년 9월 입학자부터 : 150점

제4장 학위프로젝트

제16조(학위 프로젝트 인정요건) 본 대학원 밖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한 프로젝트와 ‘학위 프로젝트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지 않고 진행된 프로젝트는 학위 프로젝트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7조 (학위 프로젝트의 지적 재산권) 학위 프로젝트의 지적 재산권은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과 제출자가 공유한다. 외부의 지원기관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본 대학원의 내규를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졸업작품의 명시) **학위작품 발표**에 관련된 인쇄물에는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영상학 박사학위(D.F.A.) 졸업작품’이라고 명시하여야 한다. 단, 학위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위 사항을 명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학위프로젝트**의 형식과 내용

제19조(학위프로젝트의 인정요건) **D.F.A.** 학위프로젝트는 논문과 영상예술작품 혹은 논문과 문화예술프로젝트, **디자인프로젝트, 기타(별도로 정함)**로 구성되며, **프로젝트 연구계획서의 제출** 및 심사과정에서 **해당** 형식 중 하나를 명시해야 한다. 영상예술작품이나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없이 **학위논문**만을 제시하는 **학위프로젝트**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논문과 관련 있는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공연기획안 및 전시기획안 등도 문화예술 프로젝트로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영상예술작품의 형식) 학위프로젝트로 제출되는 영상예술작품은 장르와 매체 등에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심사를 위해 가능한 한 DVD에 작품의 내용을 담아 제출해야 한다.

제21조(영상예술작품의 발표) 학위프로젝트로 제출되는 영상예술작품은 반드시 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소에서 전시회나 상영회 혹은 공연 등을 통해 발표해야 한다.
단, 심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작품발표는 대체 또는 생략될 수 있다.

제22조(영상예술작품의 요건) 상기 프로젝트 중 기획 및 연출을 **단독 저자**로서 수행하고, 프로젝트의 목적이나 형식이 진행 중인 학위논문에 부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학위 프로젝트로 인정될 수 있다.

제23조(학위논문의 내용) 학위논문은 **부록의 형태로** 영상예술작품 또는 문화예술프로젝트, **디자인프로젝트**의 발상, 기획, 리서치, 제작 등 진행과정 전반에 대한 시각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제6장 교과목 수강

제24조(필수교과목)

① 영상예술학 D.F.A. 과정의 필수교과목은 ‘영상문화론(OA600)’, ‘비주얼 리터러시와 미디어예술(OF610)’, ‘영상예술학 박사세미나 1(OF611)’, ‘영상예술학 박사세미나 2(OF612)’, 등 4개의 교과목으로 정한다. 이 조항은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2006년도 이전 입학자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1. 2006년 8월 현재 6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60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필수과목 면제
2. 2006년 8월 현재 4학기 이상을 수료한 경우 영상예술학 박사세미나 1이나 2 중 1개 교과목과 영상예술학 전공 개설 교과목 2개 이상을 기준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필수과목 면제
3. 2006년 8월 현재 4학기 미만을 수료한 경우 4개 필수과목 중 3개 이상을 수강할 경우 필수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간주

② 2016년 9월 입학생부터는 필수교과목을 ‘영상문화론’, ‘비주얼리터러시와 미디어예술’, ‘영상예술학 박사세미나’ 등 3과목으로 한다.

③ 2018년 9월 입학생부터는 영상예술학 전공의 필수교과목을 ‘영상예술학박사세미나’, ‘영상예술과 미학’, ‘사회 속의 예술’ 등 3과목으로 한다. 이는 2018년 9월 재학생에게도 소급적용 된다. 즉, ‘사회 속의 예술’은 기존 ‘영상문화론’에 대한 대체과목이 될 수 있으며, 기존 필수과목 중 동일제목이 아닌 새로운 필수과목 수업을 수강할 경우 이를 필수과목 이수로 인정한다.

제7장 종합시험

제25조(응시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하고 54학점 이상 취득하였으며 프로포절에 합격한 자에 한한다.

제26조(출제영역) 종합시험은 2개 영역에 걸쳐 전공필수영역과 논문주제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논문주제영역은 해당 학생의 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가 논문의 수행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평가로서 전공필수영역 평가와 같은 날 실시한다.

제27조(출제위원) 전공필수영역은 D.F.A. 전공 주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전임교수가 문제를 출제한다.

제28조 (합격기준) 종합시험은 각 영역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판정한다.

제8장 외국어시험

제29조(외국어시험인정기준) **외국어시험**은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관한 내규’를 준용한다.

제30조(외국어성적제출시기) **D.F.A.** 과정은 본심사 이전에 외국어성적을 제출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단, 제출점수는 제출시점에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31조(**외국어 시험** 합격기준) **삭제**

제9장 학위논문 및 학위작품 심사

제32조(심사위원회 구성) 학위논문 및 **학위작품**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회 구성은 지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추인한다.

제33조(심사위원회의 요건) 학위 논문 및 프로젝트 심사위원 5인중 최소 3명은 반드시 본교 전임교수로 구성된다.

제34조(외부 심사위원의 요건) 외부 심사위원은 교육부가 학력을 인정하는 대학교(대학 포함) 전임 교수 이상이어야 하지만 대학원장이 인정할 경우 비전임교수 및 현업 전문가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제 35조 (학위논문 프로포절) 2016년 9월 입학자부터 입학 후 6학기 이내에 학위논문 프로포절에 합격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예비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

부 칙

(1) (경과조치) 커뮤니케이션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내용이 내규에 적시된 내용보다 우선한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11월 01일자로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2조, 제15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35조, 별표1, 별표2,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조번호변경)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한다.

(5) ① 이 내규는 202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8년 9월 1일부터 제1조, 제18조, 제22조, 제29조, 제31조 개정 내규는 이 내규에 따라서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2조 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 배정 학기, <별표1>내지<별표2>의 논문 및 작품 점수, 제12조 입학년도에 따른 필수 학술평점, 제13조 학술평점 산출방식, 제14조 평가확인서 제출, 제15조 입학년도에 따른 학술평점 적용기준, 제24조 입학년도에 따른 필수교과목 개정에 관하여 시행한 사항들은 이 내규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12. M.F.A. 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 2022. 02. 0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 제3조(전공) ①항 중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영화, 미디어아트 전공의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필수교과목) M.F.A.과정의 공통필수 교과목은 'M.F.A.파운데이션'(3학점)과 M.F.A.학위프로젝트(1학점)이며, 전공별 필수교과목 2과목(각 3학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전공별 필수교과목은 별도로 정한다.**

<1.2.3 삭제>

제3조(학사지도교수) M.F.A.과정의 각 전공주임교수는 모든 신입생의 학사지도교수 역할을 수행한다. '학사지도교수'는 '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가 정해질 때까지 각 학생의 수강신청 및 학사업무를 지도한다.

제4조(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 ① 본 대학원의 전임교수 및 본 대학교의 관련 분야 전임교수는 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② 학위논문과 학위작품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기 이후 '프로포절(논문) 및 지도교수 신청서/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프로포절 심사를 진행한다. 프로포절에 합격한 학생에 한해 전공주임교수가 '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를 결정한다.

③ ②항의 연구계획서에는 논문의 세부 주제, 학위 작품의 제작 기획과 희망하는 '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를 명시해야 한다.

제5조 (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의 선정) M.F.A. 전공주임 교수는 학생이 신청한 '학위프로젝트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를 해당 교수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제6조(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의 역할) '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가 확정된 학생은 '학위프로젝트 프로포절'의 준비를 포함한 학사업무를 '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7조(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의 변경) M.F.A.과정생은 프로포절 이후 1회에 한하여 '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 전후의 지도교수와 해당 전공 M.F.A. 주임교수가 협의하여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의 변경을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이외에는 해당 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의 유고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프로포절 발표일정) 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가 승인한 **석사 2학기 이상**의 경우 프로포절 심사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다. M.F.A. 프로포절은 공개 심사로 진행되며, 발표 일정은 해당 학기 각 M.F.A. 전공주임교수들의 협의 하에 정해진 M.F.A. foundation

수업의 시간과 연계되는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9조(프로포절 발표방식) M.F.A. 프로포절 발표방식은 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내용과 길이를 구성한다. 또한 공개심사로 다른 참관자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제10조(프로포절 심사위원) 프로포절 심사는 해당 전공교수가 최소 2명 이상 참석하여 심사해야 한다. 최소 인원이 심사하지 못할 경우 타전공 또는 전공의 겸임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제11조 (프로포절 심사와 합격 기준) 프로포절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이 학생의 프로포절 발표 내용에 대해 학위프로젝트 연구를 진행하기에 그 준비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프로포절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학위프로젝트 프로포절 심사에 있어서 심사위원은 프로포절 지원자의 연구태도, 연구 및 학위프로젝트 주제의 타당성, 취급방법의 타당성 등을 엄밀히 심사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한다. ② 그 준비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학기에 다시 프로포절 심사를 받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제목변경) 프로포절에 합격한 이후 학위논문이나 학위프로젝트의 제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위프로젝트 제목변경원>을 예비심사 전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순한 제목의 변경이 아니라, 학위프로젝트의 진행 주제와 내용이 상이하게 변경될 경우, 이미 프로포절에 합격하였더라도, 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는 프로포절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위원배정) 프로포절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가 협의하여 심사위원을 배정한다.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지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추인한다.

제14조(심사위원회구성 및 변경)

- ①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 ② 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는 주심을 담당한다.
- ③ 심사위원 중 1인은 외부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
- ④ 학위프로젝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외부인사는 프로젝트 주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이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관련 전문가여야 한다.
- ⑤ 부득이한 이유로 프로젝트 본심사 이전에 심사위원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공주임교수와 학위프로젝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심사위원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제15조(심사위원장) ①② <삭제>

제16조(재심사) 학위프로젝트 본심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1학기 이상 경과한 후 심사용 학위프로젝트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받을 수 있다.

제17조(제출) 본 심사에 합격한 M.F.A. 과정생은 완성된 학위논문 및 학위작품을 소정 기일 내에 행정팀과 유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팀에 제출할 때는 작품 DVD 혹은 제 18조의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상응하는 작품결과물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부 칙

- (1) ① 이 내규는 202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8년 9월 1일부터 이 내규의 신설로 인하여 시행한 사항들은 이 내규에 따라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3.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제정일 : 2007. 03. 01.

개정일 : 2008. 10. 15.

개정일 : 2011. 03. 01.

개정일 : 2019. 09. 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교외 인사나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각종 장학금의 수급자 수와 금액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향
2.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지급기준
3. 기타 장학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4조(신청자격) 장학금은 정규학기에 등록한 본 대학원 재학생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연구등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급원칙) 장학금 수혜자 선정의 기본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매학기 시작 전에 수혜자를 선정, 공지한다.
- ② 동일 학생이 동일 학기에 두 개 이상의 교내 장학금을 중복 수혜 받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선정기준) 본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원칙적으로 3.0 이상) 품행이 방정한 자로서 해당 장학금 수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학업성적우수자를 우선 기준으로 선정한다.
- ② 성적 외 가계곤란 등 특이사항이 파악되는 경우, 이같은 개별사정을 지급여부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제 2 장 장학금의 종류

제7조(장학금의 종류) 대학원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장학금
2. 특별장학금 : 연구장학금 이외에,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외부기관 장학금이나 기부금에 의한 특별장학금 지급 가능

제8조(장학금 관련 의무) 연구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다음의 의무를 수행한다.

- ① 연구장학금의 수혜자는 대학원이 요청하는 업무를 일정시간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장학생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시간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국가기관 및 외부인사 또는 장학단체 장학금 등) 교비장학금 이외의 장학금은 지급단체의 요구사항을 참조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장학생 교체 추천) ① 장학생으로 이미 추천받은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장으로부터 사유를 명시한 장학생 교체추천 공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휴학할 경우
 2. 기타 사유로 본인이 포기하였을 경우
- ②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위의 각 호에 의해 교체할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학금을 학교로 입금한 후 원장으로부터 사유를 명시한 장학생 교체추천 공문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 (1) (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은 폐지한다.
-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6조 제①항 및 제②항, 제7조 제1호 및 제2호, 제8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일 : 2019. 06. 20.

제1조(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식을 따른다.

- ① 징계위원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가 해소됨과 동시에 해체된다.
- ② 징계위원회는 대학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특성에 따라 교내 타 기관 인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
- ③ 교내 타 기관 인사는 원장이 교내의 책임 있는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 운영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④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 ⑤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조(징계의 종류 및 징계위원회 운영 등)

- ① 본 대학원 학생이 연세대학교 학칙을 위반했을 경우, 징계위원회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1. 근신
 2. 유기정학
 3. 무기정학
 4. 제적
- ② 위 ①항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제적 이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이 징계기간 중 다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위원회는 추가적인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당초 징계를 결정한 위원회와는 다르게 징계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준용)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연세대학교 학칙 등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내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홈페이지에 공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며, 원장 및 전임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정이 가능하다.

15. 강사 임용 등에 관한 내규

제정일 : 2005. 07. 15.

개정일 : 2011. 03. 01.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연세대학교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본교 규정’이라 칭함)> 제11장(시간강사) 및 <시간강사 임용 등에 관한 내규 (이하 ‘본교 내규’에 준하여 그 내용을 본 대학원의 성격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다. 강사의 초빙 및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강사는 본교 규정 제40조에 준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단, M.F.A. 및 D.F.A.를 대상으로 하는 실기 위주의 과목의 강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 및 **우수성**이 인정될 때 초빙할 수 있다.

제3조(채용절차) 각 전공의 주임교수가 적절한 강사를 선정하여 인사·평가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원장은 인사·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 학기 개강 1개월 전까지 강사를 확정, 채용하여야 한다.

제4조(구비서류) 추천되는 강사는 본교 규정 42조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담당시간) 추천되는 강사는 학기당 3학점 이하만을 담당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6 학기 이상을 강의할 수 없다.

제6조(평가) 원장은 매 학기 강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는 수강생들의 계량화된 ‘강의평가자료’와 전공주임교수 및 부원장, 원장의 논의를 통한 ‘종합의견’으로 구성된다.

제7조(외국인) 외국인을 강사로 초빙하고자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8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추천되는 외국인 강사는 C-4, E-1, E-2, E-7, E-8, E-9 중 한 종류의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발급받아야 한다.

제8조(기타) 본교 내규에 따라, 원장은 매 학기 소속 강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사정에 따라 부원장 및 전공주임교수가 간담회 개최를 대신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내규**에 적시되지 않은 구체적 사안은 내규를 통해 규정할 수 있다.

(3)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언론학 전공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 1999학년도 제1학기

시행: 1999학년도 제1학기

개정: 2004학년도 제2학기

개정: 2006학년도 제 1학기 (5, 6조부분개정)

개정: 2009학년도 제1학기

개정: 2011. 3. 1

제1조(목적) 본 대학원 학칙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학전형)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특별전형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입학전형 시 필요한 제출서류와 선발기준은 본 대학원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특별전형 지원시 영어 성적 제출을 부과한다. 단, 석사과정 지원자는 토플, 토익, 텁스, IELTS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며, 토플성적표가 없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기관토플(Institutional Toefl)에 응시해야 한다. 영어권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사과정 지원자는 기준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 시험은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학점이수) 학점이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에 준한다.

1.석사과정

가. 석사과정 학생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18학점 이상을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으로 취득해야 한다.

나. 전공필수 2과목(커뮤니케이션이론 및 커뮤니케이션조사방법론)을 첫 2학기 내에 이수해야 한다.

다. 학부에서 신문방송학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신문방송학과에서 개설하는 학부과정의 전공과목 중에서 언론학개론이나 커뮤니케이션론을 포함하여 12학점(4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첫 2학기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단, 신문방송학을 부전공으로 이수하였거나 신문방송학 관련 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주임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보충과목을 면제받거나 과목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라. 수강신청 전에 지도교수의 상담과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승인없이 신청했을 경우 수강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2. 박사과정

가. 박사과정은 대학원 과정에서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본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자는 30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타대학원 신문방송학 전공 석사과정 이수자는 24학점을 인정하고, 타 전공 석사과정 이수자는 18학점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미 이수한 신문방송학과 관련 과목의 학점에 대해서는 주임교수가 학점 인정을 할 수 있다. 본대학원 석사과정 이수자는 박사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30학점 가운데 12학점 (4과목) 이상을, 타대학원의 신문방송학 전공 석사과정 이수자는 36학점 가운데 18학점 (6과목) 이상을, 타전공 석사과정 이수자는 42학점 가운데 24학점 (8과목) 이상을 본 전공에서 개설하는 과목에서 이수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수강신청 전에 지도교수의 상담과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승인없이 신청했을 경우 수강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제4조(논문자격시험 이하 자격 시험)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언론학전공 논문자격시험 내규에 따른다.

<별첨1> <논문자격시험에 관한 내규>

제5조(논문지도) 논문지도는 다음 각 호에 준한다.

1. 석사학위과정: 3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논문지도과목을 개설한다.

가. 논문제안서 제출: 논문지도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조건으로 논문제안서를 논문지도 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나. 지도교수의 결정: 논문지도 과목 담당교수가 논문제안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논문지도 교수를 선정한다.

2. 박사학위과정; 2학기를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논문지도를 실시한다. 단, 1999학년도 제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가. 지도교수의 결정: 2학기를 이수한 후 주임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논문지도교수를 결정한다. 지도교수를 결정한 후 주임 교수에게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수강할 과목에 대해서는 주임 교수의 과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논문 제안서 제출: 논문심사를 위해서는 학위논문제안서를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된 학위논문지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학위논문지도 위원회: 학생과 지도교수의 논의를 통해 총 5명으로 구성하며 최대 2명까지 외부 심사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장은 호선한다. 단, 지도교수는 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

제6조(논문심사) 논문심사는 다음 각 호에 준한다.

가. 석사학위과정: 예비심사(이하 예심)와 본 심사(이하 본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박사학위과정: 논문제안서 심사와 예심, 본심, 최종 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 한다. 최종구술시험을 제외하고는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회 이상을 실시할 수 있다.

다. 필수업적: 논문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처에서 인정하는 교내 2등급(한국연구 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회지에 단독, 혹은 공저로 출판한 논문이 2편 이상이어야 하며, 논문을 제출하기 이전에 학술평가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이 조항은 2006학년도 제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1999년 제 1학기 입학생부터 2006학년도 제 1학기 입학생의 경우 발표 1회 이상 및 외부학회발표 1회 이상, 혹은 언론학 분야 심사 학술지 1회 이상 게재나 지도교수와의 공동저술 등의 세 가지 항목에서 실적을 인정받아야만 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다.

라. 석사과정은 예심은 공개로, 박사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마. 기타 사항은 본대학원 내규에 준한다.

제7조(기타)이외의 필요한 학과 내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교장학금

본 대학원에서 책정한 총액에 따라 주임교수가 조교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장학금

본 전공으로 배정된 장학금 총액에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첨2><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3. 학부생의 대학원 강의 수강조항은 폐지한다.(1999학년도 제 1학기부로). 학부생의 대학원 강의 청강은 가능하지만, 학점 인정은 되지 않는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제3조, 제6조)부터 시행한다.

논문자격시험에 관한 내규

제 1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 제 6장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자격)

1. 종합시험

가. 석사학위과정: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대학원과정을 3 학기 이상 이수하고 전공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영어시험에 합격한 자

나. 박사학위과정 :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30학점)을 포함하여 54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영어시험에 합격한 자

2. 영어시험: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은 영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 시험은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응시절차)

1.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 기일 내에 응시원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을 소속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자격 승인을 받은 후 응시하여야 한다.

2. 영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응시원서를 소정기 일 내에 소속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전형료) <삭제>

제5조(시험일자)

1. 종합시험: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실시한다.

2. 영어시험: 정규토플 시행일이나 학교 기관토플 일정에 맞추어 실시한다. 2003년 1학기부터 토익과 텁스로도 영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2004년 2학기부터 학과 교수회의에 의결이 있는 경우 자체영어시험을 치르게 할 수 있다.

제6조 (시험 방법) 석사학위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박사학위 종합시험은 필답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하며, 영어 시험은 정규토플이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기관 토플로 대체한다. 2003년 1학기부터 토익과 텁스도 영어 시험에 속하며, 2004년 2학기부터 학과 교수회의 방침에 따라 자체영어시험이 있을 수 있다.

1. 종합시험 : 종합시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출제와 채점 등을 관리한다. 위원장은 언론학 전공 주임교수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영어시험 : 석 · 박사과정의 경우 입학 당시 학과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경우는 면제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기관토플이나 정규토플에 응시하

여야 한다. 2003년 1학기부터 토익과 텁스로도 영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2004년 2학기부터 학과교수회의에 의결이 있는 경우 자체영어시험을 치르게 할 수 있다.

제7조(출제과목) 자격시험의 출제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시험

가. 석사학위종합시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필수과목이란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커뮤니케이션조사방법론을, 전공과목은 자신이 선택하는 해당 과목을 의미 한다. 단, 전공과목 시험은 논문지도세미나(3학기대상)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논문제안서 통과를 조건으로 면제된다.

나. 박사학위 종합시험: 필수분야, 논문분야, 선택분야로 구분한다. 필수분야는 커뮤니케이션이론, 커뮤니케이션조사방법론의 두 과목과 논문분야는 학생의 집중연구분야, 선택분야는 본 전공에서 수강한 과목 중 1과목으로 한다. 커뮤니케이션 조사방법 시험은 커뮤니케이션조사방법론1, 커뮤니케이션조사방법론2, 고급통계와 커뮤니케이션 연구실습, 타과 통계 과목 1과목 이상 모두 수강하여 전과목 A0이상인 경우에만 면제된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조사방법론시험을 부과한다. 이 조항은 1999학년도 제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2. 영어시험

가. 영어시험은 제6조 2항에 따른다.

나. 외국인 학생의 외국어 시험은 제1항의 가에 준한다.

제8조(합격인정 점수) 자격시험의 합격인정 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시험: 종합시험의 필답시험에 대한 성적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하며, 구술시험은 시험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1과목이라도 과락시 최종 불합격처리한다.

2. 영어시험: 정규토플이나 기관토플성적 55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토익 750점, 텁스 715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9조(재시험) 종합시험 응시과목 중 낙제과목이 있는 자는 그 과목을 재 응시하여야 한다.

제10조(합격)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의 합격은 대학원장이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제2조, 제4조 삭제, 제6조, 제7조)부터 시행한다.

<별첨2>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제정: 1999년 제1학기

시행: 1999년 제1학기

제1조(목적) 대학원생들의 연구능력 향상 및 연구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언론학전공 석·박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조건) 연구장학금 수혜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외 언론학 관련 학회 대학원 세션에서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언론학 관련 학회는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광고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회> 등을 말하며, <한국언론학회>, <<언론과 사회>> 분과에서 주최하는 『미니컨퍼런스』도 이에 해당된다. 또한 학과 교수회의에서 인정하는 학회도 포함된다. 단, 지급 대상자가 많아서 연구장학금 총액을 초과할 때는 박사과정 우선 지급하기로 한다.

2.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 열리는 언론학 관련 전국학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제3조의 조건에 해당되는 학생은 매 학기말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시기) 연구장학금 지급 시기는 매 학기말(8월말과 2월말)로 한다. 학기는 1학기인 경우 3월에서 8월까지, 2학기인 경우 9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제6조(금액)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언론학 관련 학회 논문 발표자에게는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하기로 한다.
- 지방에서 열리는 전국학회 참가자에게는 개최 장소와 거리를 고려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